

감정평가서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천병철
건명	전성진 소유물건(2024타경568514)
감정서번호	SJ2-241030-8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세종 서부지사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임동신

(주)감정평가법인세종 서부지사 지사장 신병기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일억이천오백만원정(₩125,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천병철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2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전성진 (2024타경56851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11.01	2024.10.30 ~ 2024.11.01	2024.11.01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25,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25,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지하철 1호선과 인천1호선의 환승역인 "부평역"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시티하우스 2층 203호)로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1)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2)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1)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4년 11월 0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기간은 2024년 10월 31일~11월 01일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감정평가의 기준 및 방법

1) 감정평가의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 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감정평가 하였음.

2) 본건 감정평가시 적용한 감정평가 방법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감정평가시에는 주된 방법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대상물건의 특성상 원가법 적용이 적절하지 않고 유사한 임대사례의 포착이 어려워 수익방식 적용이 곤란 한 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는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기타 참고사항

- 1) 본건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관련공부에 의하였음.
- 2) 본건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부득이 주변 탐문조사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대상물건의 개요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등]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692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9번길 3		
건물명 동·층·호	시티하우스 2층 203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주용도	다세대주택	사용승인일	2001.06.19
층수	지하 1층 / 지상4층	연면적	718.72m ²

일련 번호	동·층·호	용도	전유면적 (m ²)	공용면적 (m ²)	공급면적 (m ²)	대지권면적 (m ²)	전용률 (%)
1	2층 203호	다세대 주택	37.10	8.1	45.2	15.72	82.0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1.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등]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 (m ²)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m ²)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부평동 767-204	2층 20*호	34.97	125,000,000	3,574,492	2022.11.10
						2000.12.05
#2	부평동 760-692 시티하우스	1층 10*호	36.32	110,000,000	3,028,634	2024.07.25
						2001.06.19

2) 거래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 소재하는 구분건물 중 본건과 물적유사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이 높은 실거래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중에서 인근 지역의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사례 #1**을 선정하였음.

2.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 되는 바,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자가변동률,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는 본건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한 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주요 지역별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되, 기준시점 지수 미발표시 최근지수를 적용하였음.

[출처 : 한국부동산원 조사발표]

지 수 유 형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	지 역	인천광역시
---------	--------------	-----	-------

지역 : 인천광역시(22.11.10~24.11.01)

거래시점 : 2022.11.10, 2022년10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4.11.01, 2024년10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4년09월 지수를 적용함

2022.11.10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2년10월) : 102.2

2024.11.01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9월) : 96.4

시점수정치 : $96.4/102.2=0.94325$

시점수정치 결정	0.94325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항 목	세 부 항 목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차량 이용의 편리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 사용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

본건 기호	거래 사례	외부요인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	#1	1.00	1.00	1.00	1.00	1.000
결정의견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제반개별요인 상호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text{시산가액} = \text{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비교}$$

기호	사례가격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전유면적(m ²)		산출가액 (원)	시산가액 (원)
					본건	사례		
1	125,000,000	1.00	0.94325	1.000	37.10	34.97	125,087,843	12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1) 감정평가 사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사례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 (m ²)	감정평가액(원)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감정평가 목적
				단가(원/전유m ²)			
A	부평동 767-204 늘봄마을	6동 2층 20*호	34.97	124,000,000	2023.01.09	법원경매	
				3,545,896	2000.12.05		
B	부평동 767-109 우일맨션	2동 2층 20*호	30.55	90,000,000	2021.04.26	법원경매	
				2,945,990	2001.11.05.		

2)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전유면적당 가격수준(원/전유m ²)	비 고
본건 인근	다세대 주택	층별 및 동별 위치에 따라 3,200,000원 ~ 3,500,000원/m ² 내외 수준	유사 면적 기준

3)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통계자료

[출처 : 인포케어]

구 분	인천광역시		부평구		비고
	낙찰가율(%)	낙찰률평균(%)	낙찰가율(%)	낙찰률평균(%)	
집합건물/ 다세대	67.16%	68.17%	71.63%	71.70%	최근 1년 평균
	66.62%	68.09%	72.34%	71.16%	최근 6개월 평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결정의견

대상물건의 입지적 여건 및 이용상황,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가격수준, 경매통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단위 : 원)

기호	동·층·호	전유면적 (m ²)	대지권 (m ²)	감정평가액	비고
1	2층 203호	37.10	15.72	125,000,000	-
합 계				125,000,000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692 시티 하우스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9번길 3			지층 (계단실)	10.66			
				지층 (주차장)	62.94			
				1층~4층(각)	161.28			
	1. 동 소	760-692	대	준주거지역	250			
				(내) 철근콘크리트조 2층 203호	37.10	37.10	125,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소유권 ----- 대지권	15.72 ----- 250	15.72		
								토지·건물 토 지 : 75,000,000 건 물 : 50,000,000
합 계							₩125,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지하철 1호선과 인천1호선의 환승역인 "부평역"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의 북동측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과 인천1호선의 환승역인 "부평역" 및 인근 노선 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2층 2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1.06.19)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외장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의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무지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4-03-1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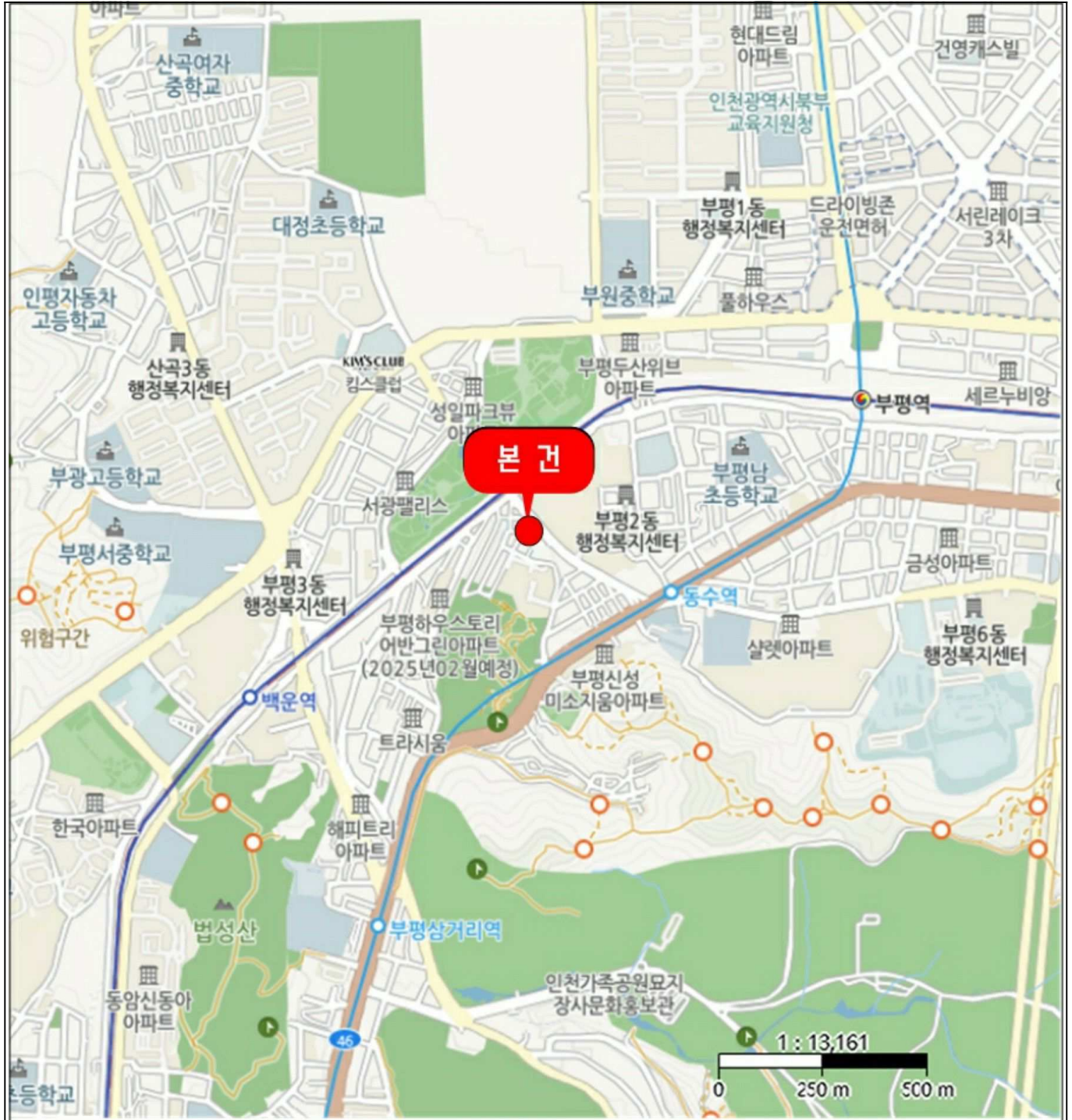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692 시티하우스 2층 2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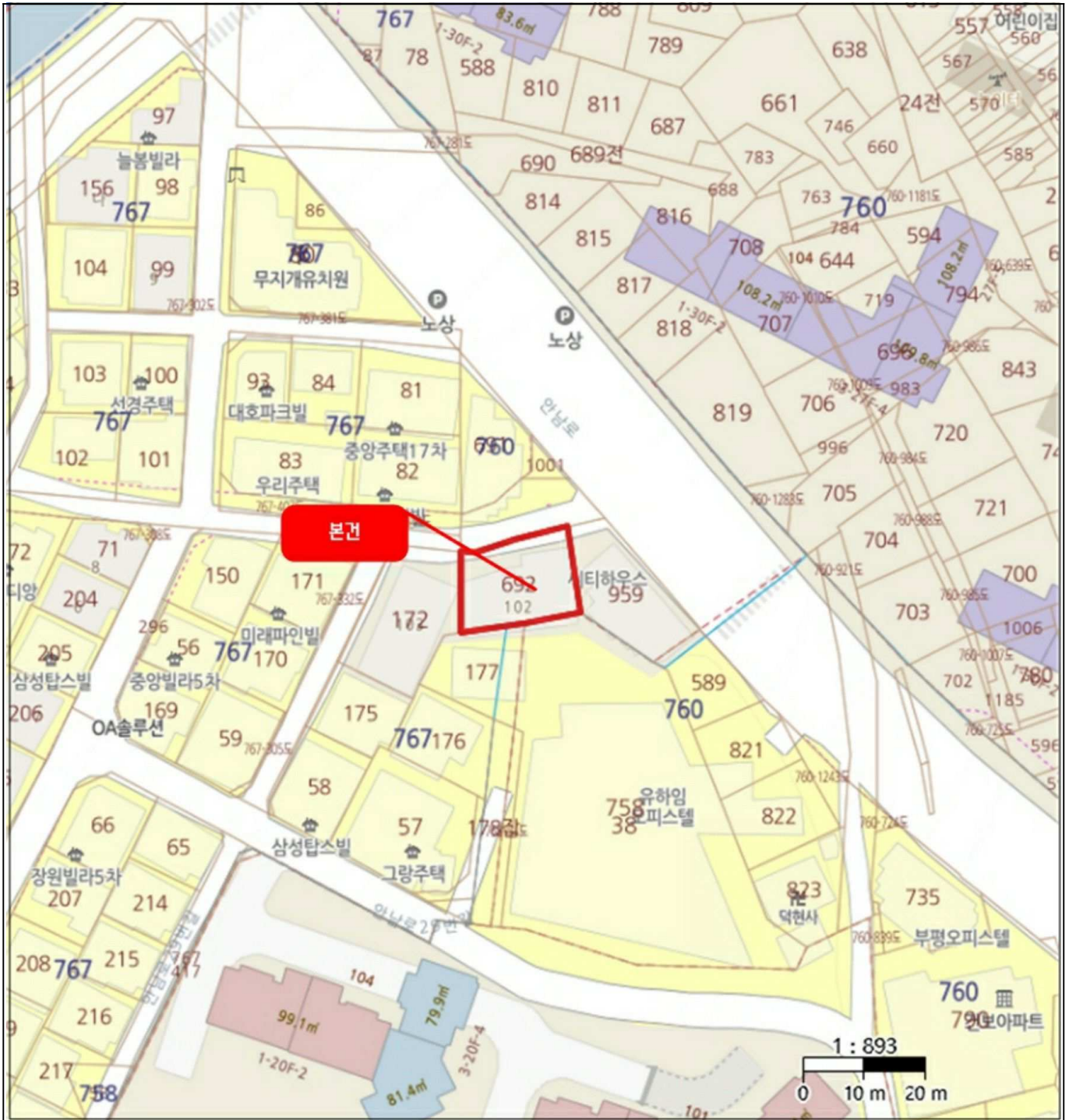


위치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692 시티하우스 2층 2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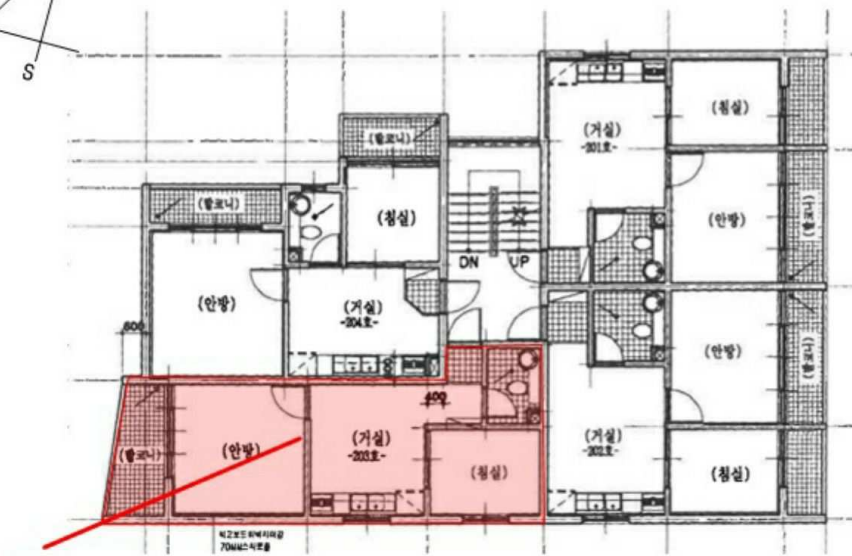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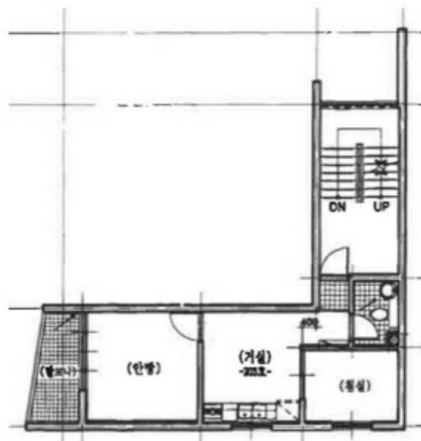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692 시티하우스 2층 203호

No Scale



203

< 2층 호별배치도 >



< 203호 내부구조도 >

< 시티하우스 2층 203호 >

